2017년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 안내문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지정 서초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의 일자리 체험과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장적응프로그램인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참여자와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서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6929-0011)로 문의 하세요.

【인턴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구 분	지원 사업 내용
사업내용	-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적응프로그램 **매월 월60만원(3개월간 총180만원한도)**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 취업장려금 지급 (기업60만원, 인턴60만원)**
참여업체	- 4대 보험가입업체 - 상시근로자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 * 5인 이하 2인 이상의 경우라도 IT, 세무, 스포츠분야, 농어촌지역 등 업종 및 지역 산업 규모 특성 경우 예외 * 제외 대상업체 : 소비, 향락,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일시적 및 다단계 업체등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등에 대해서는 인턴연계를 지양)
참여자	-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서초센터에 구직등록필수)
근무조건	- 인턴 근무조건 ■전일제 인턴 새일여성인턴 : 주당 35시간이상(월 183시간 / 월 1,184,01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 : 주당 30시간이상(월 157시간 / 월 1,015,790원 이상) ※ '17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6,470원 ■시간제 인턴 새일여성인턴 : 주당 20~35시간 미만(월 105시간 / 월 883,16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 : 주당 30시간미만(월 157시간 / 월 1,320,530원 이상) ※ 최저임금의 130%이상, 전일제와 균등대우 - 3개월 당사자간의 약정, 근로계약체결, 4대 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이상 월급 지급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 및 인턴신청자는 서초센터 방문접수 및 팩스 접수 - 해당 대상자 문의는 서초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1팀으로 연락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7년 1월~선착순(지원금 소진시까지)

* 인턴급여는 '여성인턴 지원 약정서'상의 약정임금을 말함(세전 금액, 2017최저임금: 6,470원/시간)
* 취약계층(여성가장,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및 집단상담 참여자는 우선선발 함

서울특별시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 지급

[지원사항]

▣기업지원 **지원기간 : 인턴3개월 + 정규직 2년** **인턴 1~3개월(조정 가능)** **직접채용 및 센터에서 구인 알선 가능** **정규직 후 2년간 고용유지하며, 지원금 신청 총 300만원지급**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41개 사업에 연계 &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업의 자부담이 없이, 신규인력 채용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청년의 채용 및 선발이 쉬워졌습니다.**	**▣청년지원 ▶ 1인당 최대 1600만원 + 이자**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재직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총 1600만원+이자 수령** **- 본인부담액 : 300만원 (매월 12만 5천원 납부)** **- 기업부담액 : 400만원 (정부에서 100% 지원)** **- 정부부담액 : 900만원 (정부에서 100% 지원)**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면서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자산형성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업/인턴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채용 전에 신청
- **운영기관_'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선택 (문의전화 : 070-4808-0948 (황태원))**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대학휴학, 졸업예정, 중퇴, 고졸자는 참여 가능) ◎**1년 이상인 경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는 참여가능(자격조회 후 진행여부 안내)

■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자격조회 후 진행여부 안내)
  임금이 150만원(연장근로수당 제외) 이상인 기업,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신청 전 1개월)

<예외> 5인 미만 기업 중 참여가능 기업 ① 벤처지원업종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신, 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기청, 자치단체 및 경제단체 등이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⑥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⑦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대학별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등	**<참여제한 대상 기업>** ① 약정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주 40시간 기준) ② 인턴이나 청년공제 가입 전후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 (협약체결 1개월 이전, 전에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감원 1년 미경과) ③ 인턴제 또는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의 부정신청, 수급으로 반환 또는 지급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④ 고용부장관이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인턴근무 또는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신청 시기 & 방법]

-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간에 [청년공제지원협약]체결, 인턴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전환 시
- 실시기업은 정규직_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정규직 채용일 전후 15영업일 이내, 실시기업이 먼저 중진공_청년공제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이후 청년이 순차 신청)

[지원사항]

■ **취업지원금** (정부에서 청년에게 지원)

청년에게 정규직 전환/채용 후 2년간 900만원 (5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수령 후 5일 이내
- **제출서류 :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재직 및 임금 지급 여부 증빙자료(근로계약서(최초1회만), 급여대장, 입금 내역 등),**

■ **기업지원금** (정부에서 기업으로 지급/일부) 700만원 중 400만원은 청년의 청년자산형성에 사용될 기업기여금으로 사용

-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
- **제출서류 :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_기업지원금

청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기업에 700만원 지급
/700만원 중 400만원은 청년자산형성에 기여(자동적립)
(기업은 실계좌로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음)

지원주기 (정규직전환)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금합계	70만원	120만원	170만원	170만원	170만원
가상계좌적립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실계좌 지급	25만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 직접채용 가능(구인·알선가능)
- 채용 전 자격 조회 후 참여 가능
- 정규직전환 시 중소기업 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본 청약 가입 후 지원(1, 6, 12, 18, 24개월)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납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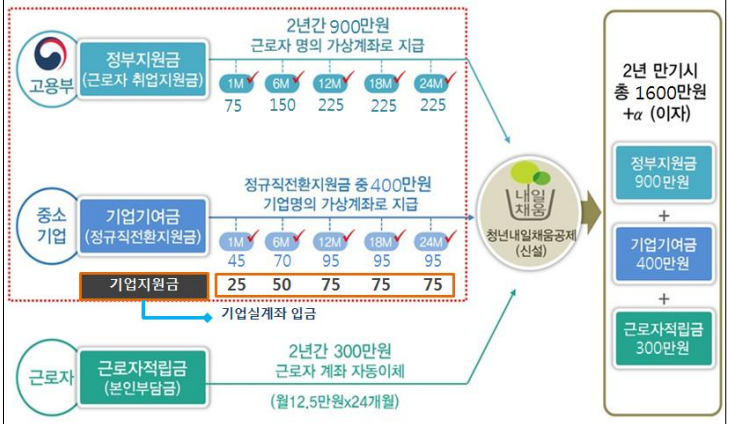

■ **근로자적립금**(청년 적립금은 본인이 적립)

청년 근로자 : 2년간 300만원 납입 * 월 12만 5천원 x 24개월

[채용한도]

청년공제는 최초의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비 50% 이내에서 가입 (인턴으로 재직 중인 자 제외)

- 강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60% 이내, 청년친화강소기업은 100% 이내

[중도해지 환급금]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근무기간		1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2월 미만	12월 이상~18월 미만	18월 이상~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공제납입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기업 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취업 지원금	청년(핵심인력) 귀책사유	**7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6월 150)	**45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6월 150, 12월 225)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1월 75, 6월 150, 12월 225)
	기업 귀책사유				**675만원** 및 그 기간이자 (1월 75, 6월 150, 12월 225, 18월 225)

1. 청년지원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원금이 올랐습니다.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업지원금 900만원 + 정규직전환 지원금 중 기업 기여금 400만원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총 1,600만원 및 이자

정부와 기업과 청년이 같이 공제 적립금 쌓아주기 때문에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도 온라인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업기여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1.1. 채용한도

①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이내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② 강소기업, 중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60% 이내 (소수점 이하는 절상)

1.2. 유의사항

① (최초 협약일 기준) 인턴 지원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 발생 시 지원금 중단 및 1년간 참여제한.
②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이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주 40시간 기준)
* 연장근로수당은 야간, 휴일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주 40시간**)

2. 기업 및 인턴 참여 자격

2.1. **기업** 참여자격
① 피고용보험자수 5인(대표자 제외)이상의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한 청년을, 해당 기업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계속 고용하는 기업

※ 제외대상
ㄱ.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ㄴ.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단,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가능)
ㄷ.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ㄹ.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②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 (해고, 권고사직 등) 사실이 없는 기업

2.2. **인턴** 참여자격
- 만 15~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신청일 기준 실업상태이어야 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정함
- 고교졸업예정자 중 학생신분으로 현장실습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갖춘 일학습병행기업 및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한하여 청년인턴제 참여를 허용.
- 휴학생으로 실업상태인 자

- 대학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중인 자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계속 근무하는 자

2.2.1 인턴 참여자격 제한

①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대학 졸업 이상자만 해당)
- 구직활동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는 적용제외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대학휴학생 및 대학 졸업예정자)는 적용제외
②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
③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	ㅇ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 후 기존 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단, 인턴의 업무와 동종, 유사자에 한하며 인위적 감원발생일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ㅇ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및 청년공제 신규가입 금지 감원 중지 대상자 적용기준 동지침 '2-5 나'항 참조
지 원 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이나 청년공제 가입 ㅇ 지원금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인턴신청,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ㅇ 인턴지원 협약 해지 및 공제가입 중단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부정수급액 1,000만이상시 형사고발 ㅇ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라 2~5배 추가징수
채용 한도	ㅇ 채용한도 위반시	ㅇ 초과자 지원(공제 가입) 중단
인턴 관리	ㅇ 인턴약정 위반	ㅇ(1차)경고→(2차)협약해지
	ㅇ 인턴교육 및 기타 인턴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기 타	ㅇ 기타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경고→(2차)협약해지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경고→(2차)약정해지

중기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우대 및 연계 지원사업 안내

◈ 창업 부문 : 6개 사업

분류	사업명	연계·우대 방안
창업	창업보육센터	BI 운영평가 가점 2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선정평가시 가점 1점
	창업선도대학	선정평가시 가점 1~3점
	창업맞춤형사업화	선정평가시 가점 1점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평가시 가점 1점
	글로벌 창업 및 외국인창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1점

◈ 인력 부문 : 7개 사업

분류	사업명	연계·우대 방안
인력	중소기업 연수사업	공제 가입 핵심인력의 연수참여시 연수비 할인(30%)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기업선정 평가시 10점)
	중소기업 계약학과	계약학과 학생 선발 時, 재교육형 등록금 정부지원금 10% 추가지원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공제 가입기간 우대 (5년 가입 時 가점 3~5점)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산학협력프로그램 협약 時 공제가입기업 선정 우대
	산업기능요원 제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유형 포함, 선정평가시 가점 5점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신설	중진공 신성장자금 中 인재 육성형 전용자금(200억원) 신설 → 대출 후 6개월내 추가 공제 가입 인원 1인당 0.1%p 금리인하

◈ 판로 부문 : 4개 사업

분류	사업명	연계·우대 방안
판로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지원	장애인기업 선정시 가점 2점
	제품판로 촉진지원사업	소공인 선정시 가점 1점
	성능인증제도	성능인증기업 선정시 가점 1~2점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1점

◈ 수출 부문 : 8개 사업

분류	사업명	연계·우대 방안
수출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마케팅 인력 공제가입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현장평가시 가점 1점
	고성장기업(가젤형) 수출역량강화사업	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2점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대기업과 함께 해외진출 중소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3점
	차이나 하이웨이	중국 진출희망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1~3점
	무역촉진단파견사업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정부지원시책에 포함하여 참여실적 배점인정(최대25점)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규격인증 지원기업 평가시 가점 2점
	글로벌강소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3점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선정평가시 가점 3점

◈ R&D 부문 : 12개 사업

분류	사업명	연계·우대 방안
R&D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시장창출형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R&D 기획역량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1인당 : 마일리지 100포인트, 최대 500포인트)
	제품공정 개선지원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정보화지원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정보화지원사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 기타 : 4개 사업

분류	사업명	연계·우대 방안
디자인	미래혁신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5점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2점
지정 제도	뿌리기업 지정증발급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명문장수기업 확인	일자리창출 정책참여 가점 2점